

인천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840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접수 제107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0. 30. 소외 C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16.9%,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여하였고, C는 2021. 10. 5.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는 2021. 3. 1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접수 제10778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C에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연체를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C에게 2012. 7. 19.부터 2017. 4. 27.까지 117,293,62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 중 미지급금 48,076,620원의 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와 피고가 모녀지간인 점, ② C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대여금과 변제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